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지침

제 정 : 2015. 1. 13.
1차 개정 : 2017. 2. 27.
2차 개정 : 2022. 9. 13.
3차 개정 : 2023. 10. 9.
4차 개정 : 2024. 3.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통칭하여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1의2. 제1호 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 1) 상호 및 명칭
 - 2)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업종 및 목적
 -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討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신용정보의 처리 등

제3조(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① 신용정보는 신탁의 수탁 및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PFV 포함), 부수업무의 위임, 기타계약의 체결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집·이용 및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에서 규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4.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고지
5.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6.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⑤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와 관련하여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 사전고지
6.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에 관한 사항
7.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8.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제3자 제공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과의 관련성

⑥ 제4항 및 제5항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1. 서면(별지 제1호 내지 제6호 서식 이용)
2.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 이 경우 본인여부 및 동의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양식

⑦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의뢰서를 받아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신용정보의 제공계약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 또는 반납에 관한 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① 회사는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3.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 사항 변경 시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 후 동의 획득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조(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신용정보제공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2.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 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신용정보제공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개인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③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신용정보제공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④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체결하는 신용정보제공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2.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사항
 4.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5.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제3장 신용정보의 관리 등

제6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인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운영)

①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따른 기록을 3년간 보존하며, 점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업무처리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정보유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9조에 따른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공개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2.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4. 신용정보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신용정보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보호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② 회사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①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중 접근통제 관련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2. 회사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4. 회사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5.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6. 회사는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7. 회사는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한다.
 8. 회사는 업무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관련 대책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2.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④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중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관련 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는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 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3.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나.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5.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중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관련 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2. 제1호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 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⑥ 제1항의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중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 관련 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인쇄, 화면표시, 파일 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2.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⑦ 제1항의 관리적 보안대책 중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관련 사항은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⑧ 제1항의 관리적 보안대책 중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관련 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가.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 나.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1)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2)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제1항의 관리적 보안대책 중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 등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⑩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⑪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0조(신용정보 분리 보관 및 접근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제1호 나목의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회사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나목에 따라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접근권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그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 내역을 3년간 보관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제11조(개인신용정보의 처리기록 관리·보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가. 수집·이용한 날짜

나. 수집·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폐기한 경우
- 가. 삭제·폐기한 날짜
 - 나. 삭제·폐기한 정보의 항목
 - 다. 삭제·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12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후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신용정보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3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 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필요한 인적·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상거래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로서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의 철회)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의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회사는 신용정보 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행사로 인하여 중단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4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 ① 신용정보주체는 제12조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회사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는 사실여부의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및 신용정보법 제38조 제5항에 따른 시정요청 절차를 정정 청구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신용정보의 삭제)

- ① 회사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삭제로 인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삭제하여야 한다.

④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의 시행 및 확인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⑥ 회사는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관 사유의 근거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삭제청구 처리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⑪ 기술적 특성으로 제9항 및 제10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회사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회사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회사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6.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그 근거가 되는 사유와 함께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 ① 회사는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에 관해서는 개인정보관리규정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 ② 회사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회사가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사가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신용정보의 누설 및 통지)

- ① 개인신용정보 누설은 회사가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신용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② 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회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④ 회사는 누설 발생 확인 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각 호의 사항 통지 후 미확인사실에 대하여는 확인 즉시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신용정보주체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의 방법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것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⑦ 제6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전항의 신용정보 누설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9조(본인확인)

- ①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동의철회, 이용(제공)사실 통보 등을 요구(이하 “열람 등의 요구”라 한다)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요구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2호 서식)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받아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보칙)

- ① 제9조 제10항의 자체 제재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I. 목적

이 기준은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주체 및 개인신용정보 취급자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운영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업무목적에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 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을 저장하고 이

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고,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암호화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이는 조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사유·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인식별정보의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 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3.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망에 개인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나. 그 밖의 신용정보회사등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4.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 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조회회사 (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가 서로 개인식별번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암호화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컴퓨터바이러스 방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처리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상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백신 소프트웨어는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바이러스경보가 발령된 경우 및 백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 업데이트 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최신 소프트웨어로 갱신·점검한다.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 시 (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III.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별표 2]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 (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

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별표 3]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자체 제재기준

징계양정	부당이용 (무단조회 등)	업무 목적외 유출	업무목적 유출
정직(업무정지) 이상	500건 이상	50건 이상	50,000건 이상
감봉	50건 이상	5건 이상	5,000건 이상
견책	5건 이상	1건 이상	5건 이상
주의(경고)	1건 이상	-	1건 이상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위탁자 및 수익자, 기타 계약거래상대방]

(주)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민감정보	<p>기초생활보장 수급자</p> <p>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 거래매체정보: ID, 매체종류, IP/MAC주소, 이용단말기정보 -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 거래자격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L 일반개인정보	<p>상품종류, 금융거래정보(거래의 종류, 거래조건, 일시, 금액 설정 생성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p>
L 신용도판단정보	<p>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 및 해소여부, 명의도용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p>
L 신용능력정보	<p>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p>
L 공공정보 등	<p>개인신용정보평점, 기초수급자여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p>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p>다음과 같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사)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터)
제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조기경보시스템 포함) -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본인의 신용등급, 연체정보 등 신용조회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 <p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제공 동의는 본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L 일반개인정보	<p>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p>
L 신용도판단정보	<p>미수(채권)발생 및 해소정보, 연체 및 해소정보</p>
	<p>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
조회 목적	본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주)무궁화신탁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되며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다만, (주)무궁화신탁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하며 본계약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소멸시 까지 유효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조회 동의는 본 계약의 체결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L 신용거래정보	대출 및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체크카드, (가계) 당좌예금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 발생해소시기, 채무불이행 관련인 발생사실, 채무불이행 여부
L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L 공공정보 등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타 기관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위 개인신용정보 <u>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수탁사	미정
처리 목적	IT업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처리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당사는 본 동의서 징구 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관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탁사가 정해지는 경우 즉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본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동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	--



본인 성명: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차입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자]

㈜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민감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L 일반개인정보	동·호수, 분양대금, 분양조건 등 분양계약 내용
L 분양계약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처리</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다음과 같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시공사 000, 중도금대출기관 - 위탁자 000
제공 목적	- 분양현황, 분양대금 납입정보, 소유권이전등 분양관련업무 - - 분양계약 체결 관련 분양매출 세금신고·납부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제공 동의를 본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동·호수 및 연락처, 생년월일, 분양계약일, 분양금 납입현황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수탁사	OO분양대행사, 입주업무를 위한 수탁사(미정), 임대차 및 관리업무를 위한 수탁사(미정)
처리 목적	분양 관련 업무, 입주 관련 업무, 임대차 및 관리 업무, IT업무개발 및 운영 등
처리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본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동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	--



본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서명)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자]

㈜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민감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 분양계약정보	동·호수, 분양대금, 분양조건 등 분양계약 내용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처리</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다음과 같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중도금대출기관
제공 목적	- 분양현황, 분양대금 납입정보, 소유권이전등 분양관련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제공 동의는 본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동·호수 및 연락처, 생년월일, 분양계약일, 분양금 납입현황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3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수탁사	00분양대행사, 000, 000
처리 목적	분양 관련 업무, 입주 관련 업무, 임대차 및 관리 업무 등
처리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본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동 필수동의서(계약체결)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	--



본인 성명: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매매계약자]

㈜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p>-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p>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계약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 민감정보	<p>기초생활보장 수급자</p> <p>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거래매체정보: ID, 매체종류, IP/MAC주소, 이용단말기정보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거래자적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 일반개인정보	<p>매매물건정보(동·호수, 소재지 등), 매매대금, 매매조건 등 매매계약 내용</p>
🔒 매매계약정보	<p>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처리</u>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다음과 같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본 건 관련 신탁사업의 우선수익자, 위탁자
제공 목적	- 본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조기경보시스템 포함) - 법령상 의무이행, 금융사고 방지,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보관 위 보유 기간에서의 사업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사업 종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계약에 관한 제공 동의는 본 계약의 설정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L  매매계약정보	매매물건정보(동·호수, 소재지 등), 매매대금, 매매조건 등 매매계약 내용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귀하가 본 동의서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본 동의서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매매계약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	---



본인 성명: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공매입찰용]

㈜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입찰 참가, 공매입찰자 본인확인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p>위 보유 기간에서의 사업 종료일이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적극적 폐쇄 및 모든 상품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합니다.</p>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공매 입찰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고유식별정보	<p>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민감정보	<p>기초생활보장 수급자</p> <p>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거래매체정보: ID, 매체종류, IP/MAC주소, 이용단말기정보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거래자적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p>입찰물건정보(동·호수, 소재지 등) 등 입찰신청 내용</p> <p>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처리</u>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p>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귀하가 본 동의서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입찰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 동의서의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입찰 신청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서명)

[필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청약신청자용]

㈜무궁화신탁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무궁화신탁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 하는 경우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처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분양계약 신청 및 신청금 납부 - 법령상 의무이행(실명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 불공정거래예방, 적합성확인 등) - 금융사고 방지(본인확인, 이상금융거래탐지 등), 분쟁·민원처리 등 사고 조사 - 통계 및 분석, 리스크 관리,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금 반환 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p>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사전 분양계약 신청 및 신청금 납부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체결, 이행,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p>

수집·이용·처리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민감정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 <u>민감정보</u> 수집·이용·처리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택, 직장), 연락처(휴대폰, 주택, 직장), 이메일 주소, 직업, 직장명, 부서, 성별, 국적, 거주자구분, 거주지국가, 연계정보CI, 국내거소신고번호 - 대리인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명, 국내거소신고번호, 본인과의 관계 - 거래매체정보: ID, 매체종류, IP/MAC주소, 이용단말기정보 - 고객확인정보(CDD/EDD): 고객신원정보,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 예상거래, 대리인의뢰인 등 특수관계자 정보 - 거래자격 판단정보: 특정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위한 교육이수번호, 자격증번호
📄 청약신청정보	계약예정 동·호수, 청약금, 청약조건 등 청약신청 내용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처리</u> 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사	OO분양대행사
처리 목적	청약자 신청 및 분양계약 전환 관리
처리할 개인(신용) 정보의 내용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또는 위탁업무 완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까지 유효합니다.

- ※ 동의자가 대리인인 경우 명의인이 대리인에게 명시적으로 선택동의서의 동의까지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리인은 명의인의 필수동의서에 한해 동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침(또는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므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권리에 대한 안내	귀하가 본 동의서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청약신청을 할 수 없으며, 본 동의서의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청약신청을 위한 동의는 완료됩니다.
-------------	---



본인 성명: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년 월 일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이용 내역통보(공시)

구분	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제공하는 자		
정보를 제공받는 또는 제공하는 근거 법령		
정보의 이용 목적		
정보의 주요 내용		
정보 제공 또는 제공받는 일자		
정보 보유기간		
정보 이용기간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내역을 통보(공시)합니다.

20 년 월 일

(주)무궁화신탁 (인)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뢰서

(주)무궁화신탁 귀하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구분		내용
의뢰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정보 이용 목적		
요청 근거 법령 (정보이용 증빙서류)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제공 기한		

20 년 월 일

성명 : (인)

첨부 : 주민등록증 사본

요청인 신원 확인자			
담당자		서명	

개인(신용)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 []기타)청구서

정보 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대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요구 내용	[] 열람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 등 기재
	[] 처리정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 등 기재
	[] 동의철회	개인(신용)정보의 동의철회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 등 기재
	[] 기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통보 등 요구내용 기재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무궁화신탁 귀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당사가 년 월 일(통지요구일) 부터 최근 3년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용내역

이용날짜	이용목적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내역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	제공날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재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내용 별도 첨부

본 통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무궁화신탁 대표이사 (인)

담당자 주소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	---

개인(신용)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철회)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 주소 :)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input type="checkbox"/> 동의철회 조치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input type="checkbox"/> 동의철회 결정사유	
이의제기방법(*)	

(*) 유의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 방법’란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주)무궁화신탁 (인)

위 입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이용(제공)사실통보, 기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주)무궁화신탁 귀하